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 안	1620
변 호	

제안연월일 : 2018. 11. 12.

제 안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2019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회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3,258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출연금 산출 기초

구 분	산 출 식	산출금액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155,053,673천원*0.015%	23,258천원

1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세무과 부과1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서재혁	서상호	엄미애	668-2383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정성훈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인원/정원) 36명/60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3,258천원(군비 23,258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관 운영비		1년	14,642	16,513					
	주요 사업비		1년	5,980	6,745					
		연구사업	1년	3,093	3,489					
	자치단체지원	1년	2,887	3,256						
* 2019년 요구액은 최종 실과검토 결과액으로 기재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기본계획서 및 방침결정서 사본 등 참고자료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이사회 결산감사)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고, 재정분권 연계한 연구사업 집중으로 재정분권 분야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도출하였음. 연구원의 출연수입에 맞는 중장기적 자금운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청사매입 차입금은 조속히 상환토록 요구
- (운영실적 평가) 중앙정부 부처의 이해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요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책현안들에 대응하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수요에 따라 과제를 적극 수행하였으며,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을 통해 법원판례·유권해석 등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음. 2017년에 제한된 인력(박사 16명)에도 불구하고 위촉연구원(14명)과 파견공무원(8명)을 활용하여 연구과제와 사업을 수행하였음. 기관장의 장기간 부재에 따라 수립되지 못한 미션·비전 전략체계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지자체 협력분야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평가 방식을 참고하여 시도세정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지방세연구원장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 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시행

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운영개선을 제안하고 점검하겠음

③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최종) (C)	2019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연구사업	1,402	3,093	4,419	4,419	-	1,326
자치단체지원사업	1,227	2,887	3,954	3,954	-	1,067
기관운영 (인건비, 경상비 등)	14,893	14,642	14,885	14,885	-	243

④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1-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51조 시행령 : 조 례 :			전화번호 : 02-2071-2798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2018년 5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0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파견인력 제외)		36명 (10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원직 (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24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2018년 5월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 성 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 22. ~ 2020.12. 21.	
	부이사장	이 재 승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권한대행)			2018. 2. 28. ~ 2019. 2. 27.	
	원 장	정 성 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8. 1. 17. ~ 2021. 1. 16.	
	이 사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하 철 승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이 병 진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이 두 표	충청북도 행정국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고 재 영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김 철 래	강원 강릉시 부시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박 장 규	인천 옹진군 부군수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강 백 룡	광주 북구청 부구청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손 희 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7. 2. 28. ~ 2019. 2. 27.	
	감 사	김 성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장 명 균	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			2018. 2. 28. ~ 2020.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45,809 (설립이후 2017년까지 지 자체가 출자·출연한 금 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23,795 (자산 총액)
	예산액	8,406	9,986	13,313		부채	12,62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8,276	9,551	12,102		자본	11,16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572				8,027		2,545

1-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무과		출연	23,258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17년: 9,986백만원) 중 96%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23,258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107,097	7,009	7,700	11,804	13,118	13,810	15,512	17,522	20,622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8.1.1.] [법률 제15291호, 2017.12.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12.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309호, 2017.12.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